동해남부선 舊)철도시설[미포~舊)송정역]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공모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공지 사항

본 답변은 동해남부선 舊)철도시설[미포~舊)송정역]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모집공고[공고 제2015-181호]에 의거 질의 접수기간(2015.7.28~7.29)에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이며, 사업주관자 공모지침과 같은 효력을 가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서면 질의답변

질의 1) [제14조 제②항 신용상태(계량평가) 관련] 컨소시엄으로 사업 신청한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전원의 신용등급별 배점을 합한 후 산술평균하여 적용(단, 일반출자자는 제외)

-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합니다.

답변) 컨소시엄으로 사업 신청한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일반출자자는 제외) **전원의 신용등급별 배점을 합한 후 산술평균**하여 **적용**함.

* 공모지침서 제14조 참조

질의 2) [제15조 제①항 관련] 관광진흥시설계획중 구조/설비/안전계획의 평가내용은 ①설치되는 시설물 구조의 안전성, 경제성 및 시공성, ②설비 선정의 적합성,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의 우수성, ③해풍, 해수, 지형 등 외부요인에 의한 안전성 검토 등으로,

- **사용 신청자의 제안 시설물**(운영시스템)**이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와 시설물의 제원이 제시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또한, **새로 개발하여 처음 적용하는 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의문과 안전성을 어찌 평가되는 지를 질의**합니다.

- **사업신청자의 제안 시설물**(운영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및 설비 선정의 적합성, 안전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위해 해당 운영시스템의 특허권 소유 및 특허 사용승인 등과 같은 관련자료 제출이 필요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평가에 필요한 증빙 자료(제안 시설물 실제 운영 여부, 구조의 안전성 및 설비 선정의 적합성, 운영시스템의 특허권 소유 등)**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외부전문가가 평가를 시행**함.
또한, **부정한 자료**(위조, 허위 등)**로 판명**된 경우 **사업신청을 무효**함.
* 공모지침서 제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30조 참조

질의 3) [제25조 제③항 관련] 출자회사 설립 전에 사업계획서상의 출자지분율이 변동될 경우 공단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출자회사 설립 시 신규사가 출자회사에 참여하여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 **운영기술의 활용 등을 고려하여 출자회사에 신규사 참여가 필요한 경우 참여기준은 공모지침서 제6조를 준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일반 출자자중 법인이 아닌 개인도 가능**한지요?

답변) 컨소시엄인 사업신청자(컨소시엄 대표자를 포함한 5개 법인이하)**가 출자회사 설립 시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은 불가**하며, **신규사는 일반 출자자로만 참여 가능**함.
또한, **일반출자자로 법인 또는 개인 참여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음.**
* 공모지침서 제6조, 제7조 및 제25조 참조

질의 4) [제26조 제⑤항 및 제27조 제①항 관련] 출자회사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철도사업법 제46조를 준용하여 철도재산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출자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관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공단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철도시설기여금 납부를 대신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공단 포함)에 귀속하게 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모든 시설을 30년 운영 후 공단에 귀속하도록 계획할 경우 원상회복의무와 철도시설기여금의 납부가 요구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철도시설기여금**"이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모지침서 제27조에 의거 **출자회사가 공단에 납부하기로 한 약정금**을 말하며,
공단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철도시설기여금**(총공사비의 5%) **납부**를 **대신**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공단 포함)**에 귀속**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과 출자회사간 별도의 협약**으로 정함.
출자회사가 건설한 **모든 시설**은 철도사업법 제46조에 의거 **점용허가기간**(철골조 등 견고한 건물 30년)**이 만료**되면 **원상회복이 원칙**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무상 국가귀속**됨.
그러므로, "**원상회복의무**"와 "**철도시설기여금의 납부**"는 **별개 사항**임.
* 공모지침서 제2조, 제26조 및 제27조 참조

질의 5) [제34조 제⑤항 관련]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에 의해 작성하고 감사보고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날인)을 부속서류로 제출하되,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보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영업보고서란 대차대조표, 손익분석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무제표 증명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서류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상법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질의 6) [제35조 제③항 관련] 총사업비중 자기자본을 제외한 타인자본조달과 관련하여 조달방법의 확실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예: 금융기관 본점 대출 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 등)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의 본점이 아닌 지점의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 등을 제출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 **아울러, 금융기관의 범위는 일반 시중 은행외도 증권사, 자산운용사, 기타 여신전문회사 등이 단독 또는 대주단을 결정해서 대출 또는 투자확약을 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금융기관 본점 대출 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 등은 예시로써 **사업신청자가 판단**하여 **조달방법의 확실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확실성에 대한 판단은 외부 전문가**가 **평가**를 **시행**함.
또한, **부정한 자료**(위조, 허위 등)**로 판명**된 경우 **사업신청을 무효**함.
* 공모지침서 제17조, 제30조 및 제35조 참조

질의 7) [붙임 2관련] **우수제안자의 선형시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는지, 또한 모든 탑승물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우수제안자(KNN컨소시엄)가 제시한 **선형시설**(4.5㎞)에 대한 **자료 제공은 어려우며**, 본 사업의 **사업계획 및 개발규모**는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시**하여야 함.
* 공모지침서 제4조 및 붙임2 참조

질의 8) [기타] **추후 협약 시 귀책사유별로 협약해지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이 고려**되고 있는지요?

답변) 공모지침서 제22조 제2항에 의거 사업추진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사업주관자는 **본 사업의 추진으로 지출된 모든 비용 또는 사업주관자가 입은 손해**를 **공단에 청구하지 아니함**.

다만, 천재지변·전쟁·기타 정부의 중요 철도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과 사업주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참고로, **공모지침서 제22조 제1항의 사유**(천재지변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로 **사업추진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됨.

* 공모지침서 제22조 및 제23조 참조

질의 9) [제4조 제②항 관련]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자는 출자회사 명의로 사유지, 국공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출자회사의 명의로 사유지, 국공유지를 매입할 경우 공단에서 사업인정고시를 득하여 수용권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지 질의**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협의매수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본 사업으로 인해 사유지, 국공유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협의매수 및 인허가 등의 주체는 출자회사**이며, 출자회사는 점용허가 기간 만료 후 국유철도재산상의 시설물을 국가에 무상귀속할 때 지장이 없도록 **사유지 및 국공유지 매입 전에 공단과 토지 매입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모지침서 제4조 참조

질의 10) [제6조 제①항 관련]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컨소시엄 대표자를 포함한 5개 법인 이하로 구성)으로 한다.

- 상기 조항에 대해 **"일반출자자를 포함하여 5개사인지" 아니면 "컨소시엄 대표자와 구성원으로 제한**(일반출자자를 제외)**"하여 5개사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컨소시엄 대표자를 포함한 5개 법인이하로 구성(일반출자자 제외)하여야 함.

* 공모지침서 제6조 참조

질의 11) [제6조 제⑤항 관련] 단독법인 사업신청자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 상기 조항의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에 대한 기준은 "공모일" 기준인지, "제출일" 기준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단독법인 사업신청자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의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은 **접수일**('15.09.21) **기준**임.

질의 12) [제13조 제2호 관련] 가. 사업주관자 공모지침서(사업대상지 현황, 제안자의 제안서 내용 포함) / 나. 용지도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다. 공단 자산개발규정 및 점용허가규정 등

- **사업주관자 공모지침서의 원본 한글파일**(*.hwp)**와 용지도의 CAD파일 제공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 위·변조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한글파일은 제공하지 않으며,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 **공모지침서**(PDF)**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용지도 CAD파일은 갖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신청자가 해당 지자체에 지번별 용지도를 확인**바람.

질의 13) [붙임 1 관련] 토지세목조서의 비고란에 빈칸은 시설이 없다는 의미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다음지도상 해당지번 확인 시 **선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고란에 공란으로 기재**한 것이며,
사업신청자는 **현장조사를 통한 지장물**(선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대상부지 중 사업시행에 지장이 되어 시설물의 이전,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 처리계획을 제시) 하시기 바람.

* 공모지침서 제4조 및 붙임1 참조

질의 14) [제16조 관련] 제안자의 가점과 가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제13조 제2호 가목의 모든 도입시설 용도와 규모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 총평가점수의 3%, ②제13조 제2호 가목의 모든 도입시설의 용도는 변경없고,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 총평가점수 × 변동률, ③제13조 제2호의 가목의 도입시설 중 하나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컨소시엄의 대표자가 사업신청자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가점없음

- 위의 사항처럼 도입시설과 용도에 대한 가점의 기준이 있지만, **컨소시엄 사업자(KNN컨소시엄)가 제시한 사업조건 중 "사업이익의 일정부분을 부산시 및 지역사회에 환원, 또는 기여하는 조건이 변경될 경우", "사업비 변경으로 철도시설기여금의 납부금액의 변경", "설립자본금의 변경", "운영기간중 철도부지 점용료 지급에 대한 금액의 변경" 등에 대한 가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질문 1과 같은 사업조건이 변경되어도 **제13조 제2호 가목의 도입시설과 용도가 변경이 없고 규모의 축소가 없는 기준만 지킬 경우 가점**이 부여되는 지요?

답변) 제안자(KNN컨소시엄)의 가점기준은 공모지침서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용도와 규모에 한하여 적용됨.

참고로, **총평가점수**는 **본 사업주관자 공모 평가 시 제안자가 획득한 점수**('14.01 민간제안 시 제안자가 획득한 점수가 아님)를 말함.

* 공모지침서 제16조 및 붙임2 참조

2. 기타사항

○ [용어 정의 관련] "**관광진흥시설**"이라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 사업의 시설**과 기타 **부산시 관광명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공모지침서 제4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상위 관리계획, 관련법령 및 규정, 주변 여건 및 개발계획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